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5.

발 의 자 : 한준호 · 조계원 · 정준호
문진석 · 안태준 · 윤종균
민홍철 · 이정문 · 정태호
김원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2017년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임대기간이 최대 6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,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사 종료일까지 임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 현재 규정 상으로는 임대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거가 원칙이고,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근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하거나 가정어린이집 운영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주택인도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.

이에 어린이집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

보육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어린이
집 설치·운영자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
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학기
중 운영중단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9제2항
신설).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가정어린이집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제1항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49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공공임대주택 내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의9(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) ① (생 략)	제49조의9(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) ① (현행과 같 음)
<u><신 설></u>	<u>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</u> <u>가정어린이집 학기 중 임대기</u> <u>간이 종료됨에 따라 영유아에</u> <u>대한 보육 공백이 발생할 우려</u> <u>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</u> <u>업자와 제1항에 따라 가정어린</u> <u>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</u> <u>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년 이</u> <u>내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</u> <u>장할 수 있다.</u>
<u>② ~ ④</u> (생 략)	<u>③ ~ ⑤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)